|  |  |  |
| --- | --- | --- |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상무부령 2018년 제6호<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상무부 제4차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장 중산(鐘山)2018년 6월 29일당중앙•국무원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 및 실행하고 전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상무비안(商務備案) 및 공상등기의 '서류 1세트로 1개의 창구에서 처리(一套表格, 一口辦理)'를 시행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원활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상무부령 2017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1. 제5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투자자(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임한 대리인이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설립등기 신청 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정보를 온라인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합병•흡수합병 등 방식을 통한 비(非)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전환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변경등기 신청 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정보를 온라인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다음과 같이 제3항을 추가한다. "비안(備案)기구는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전송한 비안(備案) 정보를 취득한 시점부터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기 시작하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2. 제7조 제1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의 '등기하기 전 또는'을 삭제한다.3. 제8조 제1항 중의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를 삭제하고 제1항 제(3)호 중의 "또는 전체 발기인"을 "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로 개정한다.4. 제9조를 삭제한다.5. 제12조 제1항 중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설립신고표> 또는 <변경신고표>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한 후 비안(備案)기구는 작성된 정보의 온전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토를 실시하고"를 "비안(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 비안(備案) 정보를 취득한 후 작성된 정보의 온전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토를 실시하고"로 개정하고 제2항 마지막 문구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5일(근무일 기준) 내에 동일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비안(備案) 정보의 보충을 비안(備案)기구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6. 제13조 중의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예비등기 허가서류(복사본) 또는"을 삭제한다.그 외에 관련 조항의 순서와 첨부문서의 관련 내용을 상응하게 조정한다.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제1장 총칙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보다 법치화•국제화•원활화 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은 이 방법을 적용 받는다.제3조 국무원 상무부관부서가 전국 범위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부성급(副省級)도시의 상무주관부서와 자유무역시험구•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의 관련 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기구로서 해당 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비안(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종합관리 정보 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약칭)을 통하여 비안(備案) 업무를 전개한다.제4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투자는 이 방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온전하게 비안(備案) 정보를 제공하고 비안(備案)신고승낙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진술을 하거나 중대 사항을 누락시켜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이미 제출한 비안(備案) 정보와 연관된 증명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제2장 비안(備案) 절차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투자자(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임한 대리인이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설립등기 신청 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정보를 온라인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합병•흡수합병 등 방식을 통한 비(非)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전환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변경등기 신청 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정보를 온라인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비안(備案)기구는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전송한 비안(備案) 정보를 취득한 시점부터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기 시작하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6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임한 대리인이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내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신고표>(이하 '<변경신고표>'로 약칭)와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변경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 등록주소지, 기업유형, 경영기한, 투자분야, 업무유형, 경영범위, 국가에서 규정한 수입설비 세금감면 대상 해당 여부, 등록자본금, 투자총액, 조직기구 구성, 법정대표인, 외국인투자기업 최종적•실질적 지배인의 정보, 연락담당자 및 연락방식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2) 성명(명칭), 국가/지역 또는 주소(등록지 또는 등록주소지), 증서 유형 및 번호, 인수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자금 출처지, 투자자의 유형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3) 인수합병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설립하는 거래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4) 지분(주식), 합작권익이 변경된 경우;(5) 합병, 분할, 종료된 경우;(6)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익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익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7) 중외합작기업의 외국측 합작자가 투자를 조기 회수하는 경우;(8) 중외합작기업이 경영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그중에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고가 필요한 합병•분할•감자(減資) 등 사항의 경우 변경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법에 따라 공고 수속을 진행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상기 변경사항이 최고권력기구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권력기구가 결의를 한 시점을 변경사항 발생 시점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사항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하여 법률•법규에 별도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을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시점을 변경사항 발생 시점으로 한다.외국인투자 상장회사와 전국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에 등록한 회사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변화가 누계하여 5%를 초과하는 경우와 상대적 또는 절대적 지배지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해 투자자 기본정보 또는 지분 변경사항에 대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수 있다.제7조 외국인투자 상장회사의 신규 외국인투자자 전략적 투자 유치가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등기결산기구에 등기 후 30일 내에 변경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변경신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업로드하여야 한다.(1)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예비등기 허가서류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집조;(2)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투자자(또는 전체 발기인) 또는 그 수권대표가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신고 승낙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그 수권대표가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신고 승낙서>;(3) 수권위탁서 및 피위탁인의 신분증명을 포함하여 전체 투자자(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 이사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임한 대리인의 증명서류. (4) 수권위탁서 및 피위탁인의 신분증명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또는 법정대표인이 관련 서류의 서명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것에 대한 증명 (관련 서류의 서명권을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음);(5)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 (변경사항이 투자자 기본정보의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음);(6) 법정대표인의 자연인 신분증명 (변경사항이 법정대표인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음);(7) 외국인투자기업 최종적•실질적 지배인의 지분구조도 (변경사항이 외국인투자기업 최종적•실질적 지배인의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음);(8) 외국인투자자가 규정에 부합하는 해외 회사의 지분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외 회사 지분을 획득하는 국내 기업의 <기업 해외투자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기 서류의 원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중국어 번역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중국어 번역본의 내용과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 내용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제9조 심사비준을 획득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이 발생하였고 변경 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이 완료된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제10조 비안(備案)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그에 발생한 변경사항이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실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제11조 비안(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 비안(備案) 정보를 취득한 후 작성된 정보의 온전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신고사항이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이 방법에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3일(근무일 기준) 내에 비안(備案)을 완료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온라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통보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비안(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형식적으로 불온전•불정확하다거나 경영범위에 대한 그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한 경우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보충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해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보충 정보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비안(備案)기구의 비안(備案) 업무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관련 정보를 모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비안(備案)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게 온라인으로 고지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동일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비안(備案) 정보의 보충을 비안(備案)기구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비안(備案)기구는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안(備案)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안(備案) 결과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제12조 비안(備案)이 완료된 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집조(복사본)를 지참하여 비안(備案)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증명서>(이하 '<비안(備案) 증명서>'로 약칭)를 수령할 수 있다.제13조 비안(備案)기구가 발행하는 <비안(備案)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1)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설립•변경 비안(備案) 신고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서류들이 형식적 요구에 부합된다는 내용;(2) 비안(備案)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3)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비안(備案) 범위에 속한다는 내용;(4) 국가에서 규정한 수입설비 세금감면 대상 해당 여부.제3장 감독관리제14조 상무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이 방법 준수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한다.상무주관부서는 추출검사, 제보에 근거한 조사, 관련 부서 또는 사법기관이 건의•통보한 상황에 대한 검사, 직권에 의거한 검사 절차 개시 등 방식으로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상무주관부서는 공안(公安), 국유자산, 세관, 세무, 공상(工商), 증권, 외환 등 관련 행정관리부서와의 긴밀한 협력•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야 한다. 상무주관부서는 감독검사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본 부서의 관리직책을 벗어난 불법행위•범칙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상무주관부서는 공평성•규범성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안(備案)번호 등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검사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무작위로 검사인원을 선정 및 파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추출검사의 결과는 상무주관부서가 상무부 외국인투자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무주관부서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가 서면 형식으로 이뤄졌고 명확한 제보 대상자가 있으며 제보자가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한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제보를 받은 후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제17조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사법기관은 그의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상무주관부서에 감독검사를 건의할 수 있으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건의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제18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한 행위를 행하였거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상무주관부서에 의해 내려진 행정처벌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기록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비안(備案)기구는 직권에 의거하여 검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제19조 상무주관부서가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 이행 여부;(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비안(備案) 정보의 진실•정확•온전 여부;(3)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에 수록된 투자금지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 전개 여부;(4) 심사비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에 수록된 투자제한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 전개 여부;(5) 국가안전심사 촉발 사유 존재 여부;(6) <비안(備案) 증명서> 위조, 변조, 임대, 대여, 양도 여부;(7) 상무주관부서에 의해 내려진 행정처벌결정 이행 여부.제20조 상무주관부서는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를 사열할 수 있고 피검사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피검사인은 상무주관부서가 요구한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제21조 상무주관부서는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검사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방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며 피검사인이 제공하는 재물 또는 서비스를 받아들이거나 기타 불법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취하여서는 아니된다.제22조 상무주관부서와 기타 주관부서는 감독검사 과정에서 입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신용 상황이 반영된 정보를 상무부 외국인투자 신용기록 시스템에 기입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한 행위를 행하였거나 <비안(備案) 증명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여, 양도하였거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무주관부서에 의해 내려진 행정처벌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신용정보를 상무부 외국인투자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신용정보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상무주관부서가 본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거나 공유하는 신용정보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개인 사생활, 상업비밀 또는 국가비밀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는 상무부 외국인투자 신용기록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기록이 불온전하다거나 오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상무주관부서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정정한다.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그 이후 3년 동안 이 방법을 재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생성된 불성실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제4장 법률책임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된 기한 내에 비안(備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소정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비안(備案) 의무의 이행을 기피하거나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진실된 상황을 은폐하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정보 또는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안(備案) 증명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여, 양도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기타 법률•법규의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유관부서가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심사비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에 수록된 투자제한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기타 법률•법규의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유관부서가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에 수록된 투자금지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기타 법률•법규의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유관부서가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상무주관부서의 감독검사를 기피•거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방해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이와 더불어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제28조 유관 업무 담당자가 비안(備案) 또는 감독관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수취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5장 부칙제29조 이 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상무주관부서가 이미 접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사항이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고 그 심사비준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비준 절차를 종료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는 이 방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제30조 외국인투자 사항이 반독점 심사와 연관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31조 외국인투자 사항이 국가안전심사와 연관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안(備案)기구가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거나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투자 사항이 국가안전심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상무부에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상무부에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수속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투자 성격의 외국인투자기업(투자성회사, 창업투자기업 포함)은 외국인투자자로 간주하며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제3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 출신 투자자의 투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제34조 홍콩의 서비스 제공자가 내륙지역에서 <<내륙지역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서비스무역협의>에 따라 홍콩을 향해 개방된 서비스무역 분야에만 투자하는 경우와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내륙지역에서 <<내륙지역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서비스무역협의>에 따라 마카오를 향해 개방된 서비스무역 분야에만 투자하는 경우 그 회사의 설립•변경 비안(備案)은 <홍콩•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내륙지역 투자 비안(備案) 관리방법(시범적 시행)>에 따라 처리한다.제35조 이 방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상무부가 발표한 부문규장과 관련 문건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제36조 자유무역시험구•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의 관련 기구는 이 방법 제3장 및 제4장에 의거하여 해당 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이 방법 실시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한다.제37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비안(備案) 관리방법(시범적 시행)>(상무부 공고 2015년 제12호)은 동시에 폐지한다.첨부 :[1.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신고서류.docx](http://images.mofcom.gov.cn/tfs/201806/20180629193728525.docx)[2.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신고서류.docx](http://images.mofcom.gov.cn/tfs/201806/20180629193728736.docx)[3.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증명서.docx](http://images.mofcom.gov.cn/tfs/201806/20180629193936860.docx)[4.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증명서.docx](http://images.mofcom.gov.cn/tfs/201806/20180629193937029.docx) |  | **关于修改《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的决定**商务部令2018年第6号《关于修改〈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的决定》已经商务部第4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8年6月30日起施行。 部长 钟山2018年6月29日为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在全国推开外资企业设立商务备案与工商登记“一套表格、一口办理”， 优化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程序，进一步提升外商投资便利化水平，商务部决定，对《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商务部令2017年第2号）作如下修改：一、将第五条第一款、第二款修改为：“设立外商投资企业，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全体投资者（或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董事会）指定的代表或共同委托的代理人在向工商和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设立登记时，应一并在线报送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信息。由于并购、吸收合并等方式，非外商投资企业转变为外商投资企业，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在向工商和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时，应一并在线报送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信息。” 增加一款，作为第五条第三款：“备案机构自取得工商和市场监督管理部门推送的备案信息时，开始办理备案手续，并应同时告知投资者。”二、删除第七条第一款、第三款，删除第二款中的“登记前或”。三、删除第八条第一款中的“通过综合管理系统”，并将该款第（三）项中的“或全体发起人”修改为“或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董事会”。四、删除第九条。五、将第十二条第一款中的“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在线提交《设立申报表》或《变更申报表》及相关文件后，备案机构对填报信息形式上的完整性和准确性进行核对”修改为“备案机构取得外商投资企业设立或变更备案信息后，对填报信息形式上的完整性和准确性进行核对”；将第二款最后一句修改为“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应于5个工作日内就同一设立或变更事项向备案机构另行申请补充备案信息。”六、删除第十三条中的“外商投资企业名称预核准材料（复印件）或”。此外，对相关条款的顺序和附件相关内容作相应调整。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进一步扩大对外开放，推进外商投资管理体制改革，完善法治化、国际化、便利化的营商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及相关法律、行政法规及国务院决定，制定本办法。第二条 外商投资企业的设立及变更，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适用本办法。第三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负责统筹和指导全国范围内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的备案管理工作。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副省级城市的商务主管部门，以及自由贸易试验区、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的相关机构是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的备案机构，负责本区域内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的备案管理工作。备案机构通过外商投资综合管理信息系统（以下简称综合管理系统）开展备案工作。第四条 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应当依照本办法真实、准确、完整地提供备案信息，填写备案申报承诺书，不得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重大遗漏。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应妥善保存与已提交备案信息相关的证明材料。第二章 备案程序第五条 设立外商投资企业，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全体投资者（或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董事会）指定的代表或共同委托的代理人在向工商和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设立登记时，应一并在线报送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信息。由于并购、吸收合并等方式，非外商投资企业转变为外商投资企业，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在向工商和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时，应一并在线报送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信息。备案机构自取得工商和市场监督管理部门推送的备案信息时，开始办理备案手续，并应同时告知投资者。第六条 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外商投资企业，发生以下变更事项的，应由外商投资企业指定的代表或委托的代理人在变更事项发生后30日内通过综合管理系统在线填报和提交《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申报表》（以下简称《变更申报表》）及相关文件，办理变更备案手续：（一）外商投资企业基本信息变更，包括名称、注册地址、企业类型、经营期限、投资行业、业务类型、经营范围、是否属于国家规定的进口设备减免税范围、注册资本、投资总额、组织机构构成、法定代表人、外商投资企业最终实际控制人信息、联系人及联系方式变更；（二）外商投资企业投资者基本信息变更，包括姓名（名称）、国籍/地区或地址（注册地或注册地址）、证照类型及号码、认缴出资额、出资方式、出资期限、资金来源地、投资者类型变更；（三）并购设立外商投资企业交易基本信息变更；（四）股权（股份）、合作权益变更；（五）合并、分立、终止；（六）外资企业财产权益对外抵押转让；（七）中外合作企业外国合作者先行回收投资；（八）中外合作企业委托经营管理。其中，合并、分立、减资等事项依照相关法律法规规定应当公告的，应当在办理变更备案时说明依法办理公告手续情况。前述变更事项涉及最高权力机构作出决议的，以外商投资企业最高权力机构作出决议的时间为变更事项的发生时间；法律法规对外商投资企业变更事项的生效条件另有要求的，以满足相应要求的时间为变更事项的发生时间。外商投资的上市公司及在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挂牌的公司，可仅在外国投资者持股比例变化累计超过5%以及控股或相对控股地位发生变化时，就投资者基本信息或股份变更事项办理备案手续。第七条 外商投资的上市公司引入新的外国投资者战略投资，属于备案范围的，应于证券登记结算机构证券登记后30日内办理变更备案手续，填报《变更申报表》。第八条 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办理外商投资企业设立或变更备案手续，需上传提交以下文件：（一）外商投资企业名称预先核准材料或外商投资企业营业执照；（二）外商投资企业全体投资者（或全体发起人）或其授权代表签署的《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申报承诺书》，或外商投资企业法定代表人或其授权代表签署的《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申报承诺书》；（三）全体投资者（或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董事会）或外商投资企业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的证明，包括授权委托书及被委托人的身份证明；（四）外商投资企业投资者或法定代表人委托他人签署相关文件的证明，包括授权委托书及被委托人的身份证明（未委托他人签署相关文件的，无需提供）；（五）投资者主体资格证明或自然人身份证明（变更事项不涉及投资者基本信息变更的，无需提供）；（六）法定代表人自然人身份证明（变更事项不涉及法定代表人变更的，无需提供）；（七）外商投资企业最终实际控制人股权架构图（变更事项不涉及外商投资企业最终实际控制人变更的，无需提供）；（八）涉及外国投资者以符合规定的境外公司股权作为支付手段的，需提供获得境外公司股权的境内企业《企业境外投资证书》。前述文件原件为外文的，应同时上传提交中文翻译件，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应确保中文翻译件内容与外文原件内容保持一致。第九条 经审批设立的外商投资企业发生变更，且变更后的外商投资企业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应办理备案手续；完成备案的，其《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同时失效。第十条 备案管理的外商投资企业发生的变更事项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应按照外商投资相关法律法规办理审批手续。第十一条 备案机构取得外商投资企业设立或变更备案信息后，对填报信息形式上的完整性和准确性进行核对，并对申报事项是否属于备案范围进行甄别。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备案机构应在3个工作日内完成备案。不属于备案范围的，备案机构应在3个工作日内在线通知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按有关规定办理，并通知相关部门依法处理。备案机构发现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填报的信息形式上不完整、不准确，或需要其对经营范围作出进一步说明的，应一次性在线告知其在15个工作日内在线补充提交相关信息。提交补充信息的时间不计入备案机构的备案时限。如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未能在15个工作日内补齐相关信息，备案机构将在线告知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未完成备案。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应于5个工作日内就同一设立或变更事项向备案机构另行申请补充备案信息。备案机构应通过综合管理系统发布备案结果，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可在综合管理系统中查询备案结果信息。第十二条 备案完成后，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可凭外商投资企业营业执照（复印件）向备案机构领取《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回执》或《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回执》（以下简称《备案回执》）。第十三条 备案机构出具的《备案回执》载明如下内容：（一）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已提交设立或变更备案申报材料，且符合形式要求；（二）备案的外商投资企业设立或变更事项；（三）该外商投资企业设立或变更事项属于备案范围；（四）是否属于国家规定的进口设备减免税范围。第三章 监督管理第十四条 商务主管部门对外商投资企业及其投资者遵守本办法情况实施监督检查。商务主管部门可采取抽查、根据举报进行检查、根据有关部门或司法机关的建议和反映的情况进行检查，以及依职权启动检查等方式开展监督检查。商务主管部门与公安、国有资产、海关、税务、工商、证券、外汇等有关行政管理部门应密切协同配合，加强信息共享。商务主管部门在监督检查的过程中发现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有不属于本部门管理职责的违法违规行为，应及时通报有关部门。第十五条 商务主管部门应当按照公平规范的要求，根据外商投资企业的备案编号等随机抽取确定检查对象，随机选派检查人员，对外商投资企业及其投资者进行监督检查。抽查结果由商务主管部门通过商务部外商投资信息公示平台予以公示。第十六条 公民、法人或其他组织发现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存在违反本办法的行为的，可以向商务主管部门举报。举报采取书面形式，有明确的被举报人，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的，商务主管部门接到举报后应当进行必要的检查。第十七条 其他有关部门或司法机关在履行其职责的过程中，发现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有违反本办法的行为的，可以向商务主管部门提出监督检查的建议，商务主管部门接到相关建议后应当及时进行检查。第十八条 对于未按本办法的规定进行备案，或曾有备案不实、对监督检查不予配合、拒不履行商务主管部门作出的行政处罚决定记录的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商务主管部门可依职权对其启动检查。第十九条 商务主管部门对外商投资企业及其投资者进行监督检查的内容包括：（一）是否按照本办法规定履行备案手续；（二）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所填报的备案信息是否真实、准确、完整；（三）是否在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中所列的禁止投资领域开展投资经营活动；（四）是否未经审批在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中所列的限制投资领域开展投资经营活动；（五）是否存在触发国家安全审查的情形；（六）是否伪造、变造、出租、出借、转让《备案回执》；（七）是否履行商务主管部门作出的行政处罚决定。第二十条 检查时，商务主管部门可以依法查阅或者要求被检查人提供有关材料，被检查人应当如实提供。第二十一条 商务主管部门实施检查不得妨碍被检查人正常的生产经营活动，不得接受被检查人提供的财物或者服务，不得谋取其他非法利益。第二十二条 商务主管部门和其他主管部门在监督检查中掌握的反映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诚信状况的信息，应记入商务部外商投资诚信档案系统。其中，对于未按本办法规定进行备案，备案不实，伪造、变造、出租、出借、转让《备案回执》，对监督检查不予配合或拒不履行商务主管部门作出的行政处罚决定的，商务主管部门应将相关诚信信息通过商务部外商投资信息公示平台予以公示。商务部与相关部门共享外商投资企业及其投资者的诚信信息。商务主管部门依据前二款公示或者共享的诚信信息不得含有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的个人隐私、商业秘 密，或国家秘密。第二十三条 外商投资企业及其投资者可以查询商务部外商投资诚信档案系统中的自身诚信信息，如认为有关信息记录不完整或者有错误的，可以提供相关证明材料并向商务主管部门申请修正。经核查属实的，予以修正。对于违反本办法而产生的不诚信记录，在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改正违法行为、履行相关义务后3年内未再发生违反本办法行为的，商务主管部门应移除该不诚信记录。第四章 法律责任第二十四条 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违反本办法的规定，未能按期履行备案义务，或在进行备案时存在重大遗漏的，商务主管部门应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或情节严重的，处3万元以下罚款。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违反本办法的规定，逃避履行备案义务，在进行备案时隐瞒真实情况、提供误导性或虚假信息，或伪造、变造、出租、出借、转让《备案回执》的，商务主管部门应责令限期改正，并处3万元以下罚款。违反其他法律法规的，由有关部门追究相应法律责任。第二十五条 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未经审批在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所列的限制投资领域开展投资经营活动的，商务主管部门应责令限期改正，并处3万元以下罚款。违反其他法律法规的，由有关部门追究相应法律责任。第二十六条 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在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所列的禁止投资领域开展投资经营活动的，商务主管部门应责令限期改正，并处3万元以下罚款。违反其他法律法规的，由有关部门追究相应法律责任。第二十七条 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逃避、拒绝或以其他方式阻挠商务主管部门监督检查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可处1万元以下的罚款。第二十八条 有关工作人员在备案或监督管理的过程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索贿受贿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五章 附 则第二十九条 本办法实施前商务主管部门已受理的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事项，未完成审批且属于备案范围的，审批程序终止，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应按照本办法办理备案手续。第三十条 外商投资事项涉及反垄断审查的，按相关规定办理。第三十一条 外商投资事项涉及国家安全审查的，按相关规定办理。备案机构在办理备案手续或监督检查时认为该外商投资事项可能属于国家安全审查范围，而外商投资企业的投资者未向商务部提出国家安全审查申请的，备案机构应及时告知投资者向商务部提出安全审查申请，并暂停办理相关手续，同时将有关情况报商务部。第三十二条 投资类外商投资企业（包括投资性公司、创业投资企业）视同外国投资者，适用本办法。第三十三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投资者投资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参照本办法办理。第三十四条 香港服务提供者在内地仅投资《〈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服务贸易协议》对香港开放的服务贸易领域，澳门服务提供者在内地仅投资《〈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服务贸易协议》对澳门开放的服务贸易领域，其公司设立及变更的备案按照《港澳服务提供者在内地投资备案管理办法（试行）》办理。第三十五条 商务部于本办法生效前发布的部门规章及相关文件与本办法不一致的，适用本办法。第三十六条 自由贸易试验区、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的相关机构依据本办法第三章和第四章，对本区域内的外商投资企业及其投资者遵守本办法情况实施监督检查。第三十七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备案管理办法（试行）》（商务部公告2015年第12号）同时废止。附件：[1. 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申报材料.docx](http://images.mofcom.gov.cn/tfs/201806/20180629193728525.docx)[2. 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申报材料.docx](http://images.mofcom.gov.cn/tfs/201806/20180629193728736.docx)[3. 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回执.docx](http://images.mofcom.gov.cn/tfs/201806/20180629193936860.docx)  [4. 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回执.docx](http://images.mofcom.gov.cn/tfs/201806/20180629193937029.docx)　　 |